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9.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9906독점0901)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는 '98.12.1. 기아자동차(주)에 대한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 강화된 시장 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시장인 수출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이 거의 없거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시장인 국내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치 않으면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 및 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을 200천원~1,000천원폭으로 과도하게 인상하였는데, 그 인상폭이 비용변동폭이나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모델변경 등 특별한 가격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여(현대자동차의 경우 모델변경을 하면서 18.21~20.53% 정도의 가격을 인상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한 가격인상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인상)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 제5호 위반	<p>◎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자동차(주): 6억6,230</li> <li>· 기아자동차(주): 4억7,910</li> </ul>
현대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2기획0180)	현대건설(주)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35 소재 「보라매 현대프라자」상가를 분양하면서 당시에 보라매 인근지역은 서울시청 신청사 이전대상 후보지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 이전대상지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6.4.18.자 조선일보 및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동지역에 '98년까지 3만3천평 규모의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완료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상가의 수분양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라매 현대프라자」상가가 고객유인효과나 수익성 등에서 실제보다 더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1999. 9.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한잡업개발공사의 표시·광고에 대한 입시중	대한잡업개발공사는 「진품누에동충하초」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천연물	◎ 대한잡업개발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지명령 건 (9909소기1260)	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을 뿐 인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전단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38만원/1곽(100g) 상당의 「진품누에동충하초」를 항암효과(수명연장효과 203%, 고힘암억제효과 59%), 간보호효과(현저한 GOT 및 GPT활성억제효과 확인), 항피로효과(대조약물 Tocopherol 대비 1.5배 증가) 면역력증강효과(대조약물 Zymosan 대비 2배 효과), 항스트레스효과(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장기의 증량변화 원상회복 탁월), 항노쇠효과(강력한 지질과산화 억제반응 관찰)가 있다며 인체에 대한 것으로 인식되는 내용을 특별한 설명없이 광고하였으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어떠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형의 마크안에 “농촌진흥청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재산상 또는 신체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위반	(9909소기1267)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서를 받은 날까지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함

1999. 9.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9907독관0974)	대림자동차공업(주)는 국내 이륜자동차 시장에 있어 73.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부품공업업체의 납품처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리점도 영업손실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과 이륜자동차 공급판매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미수금이 담보제공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외상공급물품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이유로 해당 대리점에게 추가담보로 백지수표를 제공토록 하여 이를 수취하였으며, 대리점과의 특약점계약서 제5조제1항에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대금결제시까지 제품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부품업체와의 외주거래계약서 제15조제2항에 지적재산권 보호여부나 영업비밀 보장여부의 구분없이 부품업체가 납품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제3자 판매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계약서상의 관련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거래상대방(이륜자동차 부품업체 및 이륜자동차 판매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1999. 9.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7단체1090)</p>	<p>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국내 골판지원지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8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한 '99.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중 두차례의 골판지원지 제조업체 사장단회의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인상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후 소속 구성사업자가 51자로 가격인상 방침을 일제히 각각의 수요자인 거래업체에게 통보하였으며, '99.4.8. 회의에서 골심지 물량이 남아도는 등 수급상황이 안 좋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는 후 4월 후순경에 업체별 조업단축계획을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가격인상과 생산량 조절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9. 1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9810유거1627)</p>	<p>한국까르푸(주)는 동남유통과 '97.12.31. 야채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98.9.16.까지 거래하면서 계산점, 중동점, 일산점 등 자신의 3개점이 동남유통으로부터 납품받은 야채류에 대하여 동남유통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손실보전, 주문후 납품받은 야채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납품에 따른 손실보전, 납품단가 인하차원, 영업손실보전 등을 이유로 동남유통이 무상지원하였다며 6차례에 걸쳐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고, '98.6.1.부터 8.15.까지 자신의 일산점과 계산점에서 야채류 판매업무에 종사한 판매사원 11명(누계 인원수)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건비 6,800,000원을 동 기간 자신에게 야채류를 납품한 7개 납품업체에게 납품대금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통지하여 부담케 하였으며, '98.7.14. 자신의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광고비가 자신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15개 식품류 납품업체들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송부하였고, 8.13.에는 동 광고비를 상향조정하여 통지하는 등 총 24,950,000원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킨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부당한 감액·전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13,800천원</p>

1999. 9.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경부고속도로(동대구~경주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제4공구) 입찰참가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03공동0316)	주식회사 다산건설턴트와 주식회사 건일엔지니어링 및 주식회사 삼보기술단은 한국도로공사가 '99.8.1.자로 실시한 「경부고속도로(동대구~경주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입찰」전에 발주처로부터 각각 자기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고지받은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7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낙찰가능금액의 범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건일엔지니어링은 낙찰가능금액 최저 1,776,052천원에서 최고 1,999,324천원의 범위를 벗어난 2,100,000천원으로 응찰하여 입찰에서 탈락하였으며, 삼보기술단은 낙찰가능금액 최저 1,784,310천원에서 최고 1,991,068천원의 범위를 벗어난 2,030,000천원으로 응찰하여 입찰에서 탈락한 반면, 다산건설턴트는 '97년부터 '98년까지의 기간중 다른 용역입찰에서 수주받은 24건의 낙찰율인 71.6%~87.2%보다 현저히 높은 94.89%의 낙찰율로 응찰하여 낙찰받는 등 응찰업체들간의 사전합의를 통해 자의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입찰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위반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낙찰업체가 주관하여 연명으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다산건설턴트 : 19,500천원</li> <li>· (주)건일엔지니어링 : 9,700천원</li> <li>· (주)삼보기술단 : 9,700천원</li> </ul>

1999. 9. 2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관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5단체0734)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취지상 직무보조자가 개인적 대가의 수령없이 관세사에 종속되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의 '96.7.5. 제정과 '98.2.16 개정을 통하여 동 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직무보조자로 하여금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체의 통관업무 유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다른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무보조자 3인을 채용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99.4.1.부터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들 3인의 이름을 넣은 "관세사 개업안내"전단을 이들이 종전에 근무하던 관세사무소의 거래업체에 보내자, 이러한 행위사실이 동 복무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직무보조자 3인을 자신의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99.4.30.자로 각각 6월, 3월, 2월의 취업정지를 처분하는 등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관세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p>◎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고,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500천원</li> </ul>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홍농종묘(주)의 재판매가 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9907경축1010)</p>	<p>홍농종묘(주) 청주지점은 &lt;홍농고추&gt;의 품종별 최종 소비자가격과 하한선을 지정하여 '99.1.18. 「홍농통신문 1호」를 통해 각 대리점에게 이를 위반시 종자공급 중단 및 회수를 통보한 후, 1.19. 본사에 공문을 보내 기준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2.12.에는 판매 가격이 문제된 지역의 물량은 회수조치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2.8. 「홍농통신문 2호」를 통해 타지역에 종자유출한 대리점에 대하여 종자회수 및 거래중단한 사실을 통보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p>◎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사실을 거래하는 모든 유통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한국오라클(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9904유거0533)</p>	<p>한국오라클(주)는 '98년도 9월경 서울대학교 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DBMS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Dataquest 1997 Software Market Share Summary"라는 표지제목으로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총 56쪽에 달하는 자료를 작성하면서 "Sybase Shakeup"이란 제목으로 경쟁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영업능력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는 과거의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타사의 제품 비교"라는 제목에서는 11가지의 비교 항목과 이에 따른 세부 비교항목을 만든 다음 제품명, 제품버전 등 비교되는 제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기준이나 제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또는 출처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비교되는 기능의 대부분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제품은 대부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Sybase Reference Status"라는 제목으로 경쟁사업자 제품이 설치된 병원들의 전산장애 내역 등과 관련하여 담당병원의 전산책임자가 아닌 단순히 외부 전산관계자의 진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장애사유나 기간 등을 표현하지 않고 "1일 1~2회의 시스템 재부팅", "DEAD LOCK 1일 2~3회 발생"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서울대병원 전산관계자 및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로 내정된 삼성SDS(주)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 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115,000천원</p>